



NANOPIA 2018 전시회 참가신청서

2018. 11. 7.(수)~ 9.(금), 창원컨벤션센터 및 풀만 엠버서더 호텔



www.nanopia.org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10 번길 3
T. 055-210-6107 F. 055-210-6088 E. office@nanopia.org

6. 무료등록자 (2 명)

1	이름	(국문)		(영문)	
	논문제출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이메일	
2	이름	(국문)		(영문)	
	논문제출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이메일	

※ 전시회 부스 참가 기업/기관 소속 근무자 2 인을 컨퍼런스에 무료로 등록해 드립니다.

※ 논문발표를 할 경우 온라인에서 등록비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업체 소개내용 *요청자료: 회사로고 원본 파일 (AI 또는 PSD 파일) 및 이미지 파일 (JPEG)

- 홈페이지 회사 로고 노출 및 소개, 사이트 링크를 통한 홍보 진행
(링크 할 사이트 주소 :)

-소개글 (공백포함 200 자 내외)

8.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필수)

<p>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전시회 안내 및 초청장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객관적인 전시회 검증을 위해 경상남도 및 밀양시, 주관사에 정보제공</p> <p>2)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p> <p>3) 개인정보 보유기간 : 5 년</p> <p>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시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신문사"는 "NANOPIA 2018"의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 3 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p>	<p>동의 () 비동의 ()</p>
---	-----------------------

당사는 [제 5 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NANOPIA 2018)]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3P 수록)을 수락하고, 참가비 계약금_____원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2018 년 ____ 월 ____ 일

계약담당자: (인)

대 표 자: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상기 계약 담당자는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NANOPIA 2018 전시회 참가신청서

2018. 11. 7.(수)~ 9.(금), 창원컨벤션센터 및 풀만 엠버서더 호텔



www.nanopia.org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10 번길 3
T. 055-210-6107 F. 055-210-6088 E. office@nanopia.org

제 1 조	용어의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라 함은 "NANOPIA 2018 (제 5 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을 말한다.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주관사"라 함은 "(주)경남신문사" 및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주관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부가세포함)를 신청서 제출 후 7 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 납입 완료 시 전시회 참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잔금 납부는 조기신청의 경우 7 월 31 일(화)까지, 일반신청의 경우 10 월 14 일(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2018. 9. 30. (일) 이후 참가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3 조	부스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는 참가규모, 전시품 성격, 참가신청 접수순서(참가비 입금순)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업체의 부스를 배정한다. 주관사는 효율적인 전시장 구성을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전시자는 주관사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전대하거나 전시자 상호간에 교환을 일체 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공간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장 내에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사는 해당 전시자에게 즉시 전시의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 등 제 경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의 전시 여부는 사전에 주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자는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배정된 부스위치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 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안전 철거하고 전시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 3 자에 의한 철거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관사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주관사는 필요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층 전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담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복층 공간은 주관사와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제 7 조	중량물 제한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 전시품 중량이 1.5t/m ² 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입 1 개월 전 중량품 신고서를 통해 동 전시품의 제원을 제출하여 주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해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는 다음의 경우에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중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시자가 납부하여야 할 참가비 및 부가비용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전시자가 일방적 의사로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 전시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위 1 의 사유로 참가 취소 시, 전시자가 납부한 참가비 전액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차기 전시회 참가경비로의 이월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1 년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전시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도 주관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p>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 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18년 9월 30일 이전</th> <th>2018년 9월 30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내 용</td> <td>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50%</td> <td>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100%</td> </tr> </tbody> </table>	구 분	2018년 9월 30일 이전	2018년 9월 30일 이후	내 용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50%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100%
구 분	2018년 9월 30일 이전	2018년 9월 30일 이후						
내 용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50%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100%						
제 10 조	보충규정의 제정 및 규정의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는 필요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요령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규정의 해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있을경우, 주관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관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간의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및 판정에 따른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